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규정〉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5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규정	2

I. 개요

1. 허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10.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생략)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u>정당한 사유</u>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 ----- ----- ----- -----.
<신설>	1. <u>응급환자의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부족</u>
<신설>	2. <u>해당 응급환자의 처치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부족</u>
<신설>	3. <u>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사유(이하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안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신설).
 - 개정안에 따른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는 응급환자의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부족, 해당 응급환자의 처치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부족 등임.
 - 현행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이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수용 결정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존재함.
-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방지하여 응급환자가 신속·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응급의료기관 또한 수용능력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¹⁾에 따르면, 현행법 제6조제2항²⁾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시행령 제1조의2제1항³⁾).

1) 국무회의 의결(2026. 9. 1.), 공포 예정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인 경우, 최종진료⁴⁾ 제공 가능 인력이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이거나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시간과 겹치는 경우 등임.

□ 따라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응급의료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2026. 8. 기준), 법안 심사 시 참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주영의원안(제2203411호, 2024. 8. 30. 발의), 김윤의원안(제2213901호, 2025. 11. 4. 발의), 한지아의의원안(제2216833호, 2026. 2. 12. 발의) 등 3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의 정당한 사유(이하 “정당한 거부등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요청이 새로 들어오거나 응급환자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이하 “중증응급환자”라 한다) 중 중증외상·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이하 이 호에서 “급성중증응급환자”라 한다)에게 최종진료(심신상의 중대한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가.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 나.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3.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응급의료 제공의 거부 또는 기피가 불가피한 경우

4) 심신상의 중대한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

**<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2026년 8월 기준) >**

의안명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비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03411호 (이주영의원/ '24.8.30.)	응급의료 거부·기피(응급의료기관의 장) 가능한 <u>정당한 사유</u>(안 제48조의2제2항 각호 신설) 1.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 포함) 2.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3.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4.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5.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 포함) 6.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안소위 '24. 11. 20. '25. 1. 22. '25. 8. 20. '26. 3. 12.
	제2213901호 (김윤의원/ '25.11.4.)	응급의료 거부·기피(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중단(응급의료종사자) 가능한 <u>정당한 사유</u>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법안소위 '26. 3. 12.
	제2216833호 (한지아의원/ '26.2.12.)	응급의료 거부·기피(응급의료기관의 장) 가능한 <u>정당한 사유</u>(안 제48조의2제2항 각호 신설) 1.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법안소위 '26. 3. 12.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전문의’로 한정하기보다는 ‘인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응급환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성이 있는 기 발의 법안과 함께 심사하는 등 정비 필요(안 제48조의2제2항 제2호)
- (대한의사협회) 다음과 같은 일부 수정 보완 필요
 - 현행 조문의 ‘정당한 사유’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사유를 열거하는 것은 미열거된 수용곤란 상황이 위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음.
 - ‘시설·장비’, ‘전문의’ 등의 용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응급실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규정되어야 함.
 - 정당한 사유에 따른 수용 거부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필요
- (소방청) “전문의 부족”을 일률적인 수용 곤란 사유로 규정하기 보다는, 해당 환자의 응급처치 또는 최종진료에 필요한 전문의가 다른 응급환자 처치·수술 등으로 실제 즉시 진료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야 상호 보완적인 제도 설계라 할 수 있음.
- (충남소방본부) “전문의가 즉시 진료 또는 수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전문의 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제주소방안전본부·창원소방본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안 제48조의2제2항제2호 삭제 필요

- 119구급대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확인한 증상(추정 진단)만을 근거로 하여 전문의(배후 진료과)가 부재하다는 사유의 병원 미수용이 정당화될 우려(응급실 뱅뱅이 문제 발생)
- 그 결과 환자의 최초 진료 접근권이 제한되고 재수용 문의 및 장거리 이송이 증가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응급센터의 환자 과밀화가 초래될 가능성

문 의 처

02)6788-5509